

중소기업을 위한 2021년

#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2021. 3.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차례

## 제1부 고용허가제도

1. 고용허가제 개요 .....	1
2. 2021년 외국인력 도입 운영 계획 .....	3
3. 2021년 최저임금제도 안내 .....	6
4.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 .....	7

## 제2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I. 신규 외국인근로자 .....	11
1.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 프로세스 .....	11
2.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 안내 .....	11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체 자격 .....	12
2) 내국인 구인 방법 .....	12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	13
4) 뿌리산업확인서 발급 .....	15
5) 외국인근로자 송출 국가 .....	15
6)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 신청 .....	16
7)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설정 .....	16
8)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신청 .....	17
9)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선정 기준(점수제) .....	18
10) 외국인근로자 선택 .....	19
11) 수수료 납부 .....	19
12) 수수료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	20
13)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	20
14) 사용자 교육 .....	21
15)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수 .....	21
16) 고용허가서 재발급(외국인근로자 교체) .....	22
17) 출국 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체 신청 .....	22
18) 수수료 환불 .....	23
* 자동차 정비업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내용 .....	24
II.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	25

1. 재입국특례자(舊 명칭 성실근로자) .....	25
1) 도입 목적 .....	26
2) 신청 자격 .....	26
3) 고용센터 신청 .....	27
4) 대행 신청 .....	27
5) 외국인근로자 수행업무 .....	28
6) 재입국특례자 인수 .....	28
2. 특별한국어시험 외국인근로자 .....	29
1) 도입 목적 .....	30
2) 자격 요건 .....	30
3) 고용신청 절차 .....	31
4) 대행신청 절차 .....	31
5) 입국 및 취업교육후 인수 절차 .....	31
[표] 성실근로자 및 특별한국어시험 근로자 비교 .....	32
III.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	33
IV. 취업교육비 환급 .....	37
V.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	38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38
2. 외국인근로자 4대 사회보험 .....	39
3.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내용 .....	40
4. 출국만기보험 및 체불보증보험 관련 안내 .....	41
1) 출국만기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경우 .....	41
2)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출국만기보험 및 체불보증보험 가입 방법 .....	41
3) 외국인근로자 체불보증보험 청구 방법 .....	41
4) 출국만기보험 수령 방법 .....	42
5) 출국만기보험 관련 퇴직금 차액 .....	43

### 제3부 외국인근로자 관리

I.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관련) .....	47
1. 고용허가기간 연장 .....	47
2.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에 따른 재고용 .....	47
3. 사업장 변경 .....	47
4.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48

5. 사업장 변경 대기중인 외국인근로자 채용 .....	49
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	50
7.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	50
<b>II.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출입국관리법 관련) .....</b>	<b>51</b>
1. 외국인등록 .....	51
2. 체류기간 연장 허가 .....	52
3. 고용변동사유발생 신고(사용자) .....	52
4. 근무처 변경 허가(근로자) .....	52
5. 체류지 변경 신고(근로자) .....	52
6.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근로자) .....	53
7. 임시 출국 .....	53
<b>III.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노동관계법 관련) .....</b>	<b>54</b>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	54
2. 외국인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산정 .....	55
3.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등 .....	58
4. 외국인근로자 재해발생 신고 및 처리 .....	59
<b>IV.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법 관련) .....</b>	<b>62</b>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	62
2. 안전보건관리체계 .....	65
3. 유해위험 예방조치 .....	67
4. 근로자의 보건 관리 .....	73
5. 기타 사항 .....	76
<b>V. 부당·불법행위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내용 .....</b>	<b>79</b>

## 부 록

1.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국가별 기본정보 및 참고사항
2. 각종서식 및 연락처

◎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국가별 기본정보 및 참고사항 .....	83
◎ 각종서식 및 연락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	91
○ 표준근로계약서 .....	95
○ 특례고용 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	97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99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101
-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 ..... 103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103
- 사업장 변경신청서 ..... 104
-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108
-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 109
- 외국인기숙사 시설표 ..... 111
- 기숙사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 113
- 개인정보 및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114

**<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관련 서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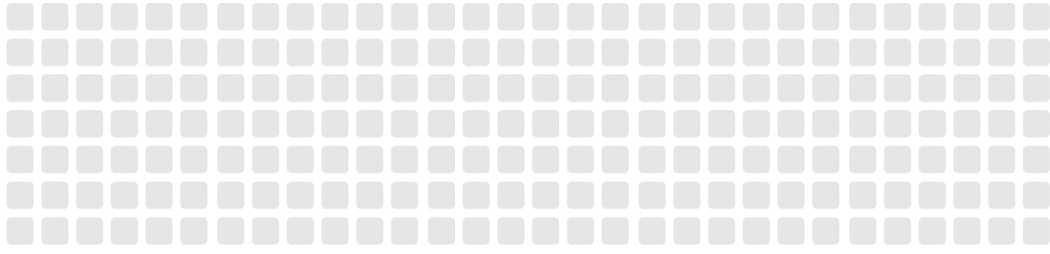
-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 계약서 ..... 115
- 성실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 계약서 ..... 115
- 특례외국인근로자(H-2)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 계약서 ..... 117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대체□환불□포기 신청서 ..... 118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지원□대체□환불□포기 신청서 ..... 119

**< 출입국관리사무소 >**

- 위임장 ..... 120
- 신원보증서 ..... 121
- 통합 신고서(외국인고용 및 체류관련) ..... 122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123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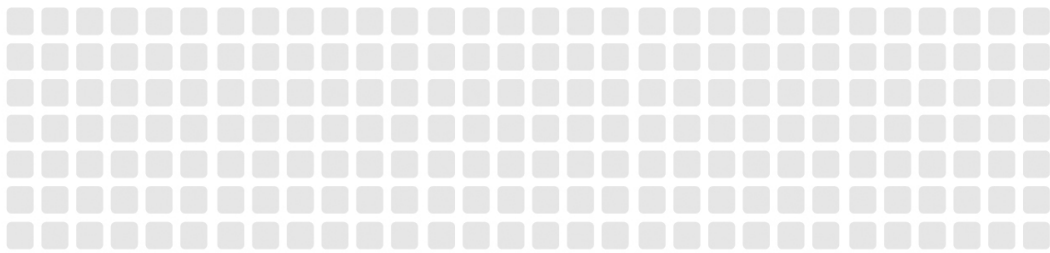
**◎ 유관기관**

- 고용센터 ..... 128
- 출입국관리사무소 ..... 132
- 송출국 주한 대사관 ..... 138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139
- 기관별 연락처 및 지원업무 ..... 140
- 중소기업중앙회 ..... 141



# 제 1 부

## 고용허가제도



# 1. 고용허가제 개요

## 1) 도입 목적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외국인근로자 : 동남아 등 16개국에서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사증 종류 E-9), 중국 등 해외동포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사증 종류 H-2)로 구분

## 2) 도입 국가 : 인력 송출국가(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3) 고용허용 업종

- 중소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는 경우 가능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창고업(내륙에 위치),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5개 업종

## 4) 도입 규모

- 매년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내 경제상황, 노동시장 동향, 불법체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외국인력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 도입업종 및 규모, 송출 국가 등 지정

## 5) 국가별 쿼터

-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선호도(신청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가별 도입할 수 있는 쿼터를 결정

## 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 최장 4년 10개월 (기본 3년 + 연장 1년 10개월)
- \* 단, 재입국특례자(구명칭 성실근로자), 특별한국어시험 외국인근로자인 경우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장 9년 8개월 고용 가능

## 7) 사업장별 고용한도

- 도입규모 총량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장별 편중이 없도록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를 설정·운영

## 8) 중소기업중앙회 업무

- 외국인근로자 대행기관 업무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및 사증발급 관련 업무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상담 및 편의제공 사업
  -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등 보험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업무
  -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실시하는 2박 3일 교육(한국어, 산업안전교육 등)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및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업무

## 9) 정부부처 및 기관(회사)별 역할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 주요 정책결정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제도 관련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
  -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업체의 고용관리 지원
-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출입국 지원 포함)
- 한국산업인력공단(EPS센터) : 외국인근로자 선발·입국 및 귀국 지원
- 한국고용정보원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전산관리
- 송출기관 : 한국정부와 MOU를 체결한 국가의 노동분야 정부부처
- 서울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 담당
- 삼성화재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담당
- 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외국인근로자 통장 개설
- 건강검진기관(오산한국병원, 한신메디피아)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마약검사 포함) 담당



## 2. 2021년 외국인력 도입 운영 계획

### 1) 도입 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 (E-9)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계(명)	52,000	37,700	6,400	3,000	1,800	100	3,000
신 규	40,000	27,400	5,090	2,650	1,780	80	3,000
재입국	12,000	10,300	1,310	350	20	20	-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 간, 신규·재입국자 간 일부 조정 가능

- 외국국적 동포 (사증종류 H-2) : 303천명 (체류인원 기준)

\* 외국국적 동포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체류 규모를 별도 배분하지 않음

### 2) 배정 계획

-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 < 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 >

시 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합 계(명)	40,000	27,400	5,090	2,650	1,780	80	3,000
2월	6,250+ $\alpha_1$	4,630	860	450	300	10	-
4월	6,250+ $\alpha_2$	4,630	860	450	300	10	-
6월	12,250+ $\alpha_3$	9,070	1,685	875	590	30	-
9월	12,250+ $\alpha_4$	9,070	1,685	875	590	30	-

※ 도입규모 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 하반기(6월·9월) 배정은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발급여부 결정

- 재입국 특례자(舊명칭 성실근로자)

-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 3) 2021년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허용 내용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li> <li>※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li> </ul>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처리업(38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li> <li>-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li> <li>-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li> <li>※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li> <li>-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li> <li>※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li> <li>- 과일류 도매업(46311) 및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li> <li>※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함</li> <li>- 생활용품 도매업(464)</li> <li>-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li> <li>-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li> <li>-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li> <li>- 무점포 소매업(479)</li> <li>- 육상여객 운송업(492)</li> <li>- <b>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b></li> <li>※ 단, 표준직업분류 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li> <li>-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li> <li>※ 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li> <li>- 호텔업(55101)</li> <li>※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2·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li> <li>- 여관업(55102)</li> <li>- 한식 음식점업(5611)</li> <li>- 외국식 음식점업(5612)</li> <li>-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li> <li>-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li> <li>-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li> <li>-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li> <li>- 사회복지 서비스업(87)</li> <li>-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li> <li>-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li> <li>-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li> <li>- 욕탕업(96121)</li> <li>- 산업용 세탁업(96911)</li> <li>- 개인 간병(96993)</li> <li>- 가구내 고용활동(9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li> <li>-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li> <li>-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li> <li>-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li> </ul>	좌 동

※ 단, '20년(46311, 46312, 52941) 및 '21년(06, 07, 08)에 추가로 허용되는 업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 4) 2021년 제도 변경 내용

##### 1) 광업의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

- 광업을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되,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제외
  -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07),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현행 제조업의 고용허용인원 적용

##### 2)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개선

-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승선비율 확대(순 어선원의 40%→50%)
-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확대(척당 2명→4명)
- 양봉의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을 영농규모에서 '군' 단위로 변경

##### 3)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최초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 강화\* 및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 \* 기숙사 시설에 대한 사진 등 시각화 자료 제출(EPS 시스템 개선), 농축산·어업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시 주거시설 사전점검 실시 등
-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

##### 4) 기타 제도개선 및 운영사항

-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4년제)한 외국인유학생을 일반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 일반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총량 내에서 일부를 외국인유학생에게 할당
-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력(E-9) 쿼터(제조업)를 배분
-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의 경우 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 인정

### 3. 2021년 최저임금제도 안내

#### 1) 최저임금 제도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 2. 적용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3.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

#### 4. 위반시 처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가능

#### 5.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년도	결정 단위	시 간 급	월 급		
			일 급 8시간	주 40시간	주 44시간 (5인 미만) 주 44시간 (5인 이상)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970,720원 2,049,20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1,941,340원 2,018,65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887,100원 1,962,250원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701,780원 1,769,55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1,462,220원 1,520,450원

\* 2021년 최저임금 : 월 1,822,4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음에 따라 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도 지급과 동일(지급x1.5배가 아님)

#### 6. 최저임금 판단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 필요

#### 4.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

- 불법 체류자는 임금 체불, 폭행·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 될 수 있고, 강제근로 등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건강보험 미적용,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
- 정부는 불시 점검,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
-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도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시행 중

##### ※ 불법고용주 벌칙 내용

- 형사 처벌 : 불법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
- 행정 제재 : 적발일로부터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

##### ※ 처벌 사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사는 합법 외국인근로자 6명과 불법체류자를 함께 고용하고 있다가, 2013년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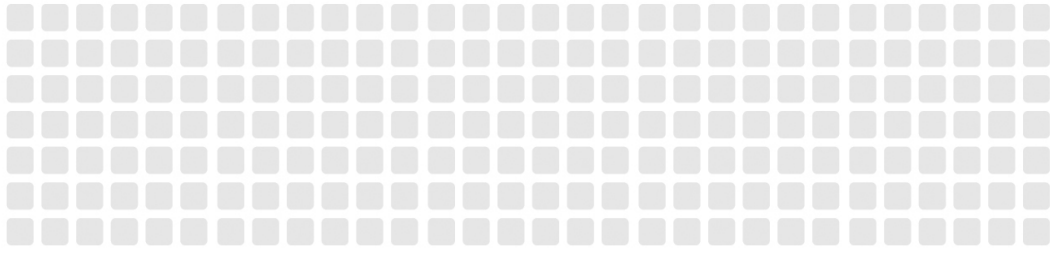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에 각각 2천만원(총 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3년간 불허

질문 1) 당사의 외국인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할수 있나요 ?

- ☞ 파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타사에 파견한다면, 정부로부터 범칙금 및 고용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95조 등)

질문 2) 외국인근로자 이탈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 ☞ 불이익이 있습니다 1년간 이탈인원을 해당기업의 고용인원에서 차감합니다. 단, 외국인근로자 이탈후 업체가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탈이 고용주 귀책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고용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제 2 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 신규 외국인근로자

## 1.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 프로세스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등 주요정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li> <li>-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선정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li> </ul>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 ↔ 송출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출비리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양해각서 체결</li> <li>○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li> </ul>
3. 취업 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출국 공공기관 ↔ 인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출국은 한국어시험 성적, 기능테스트 결과, 경력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li> <li>○ 송출국에서 구직자명부 작성 송부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li> </ul>
4.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구인노력(7~14일) 등을 하였음에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li> <li>○ 고용센터는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3배수)</li> <li>○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구직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li> </ul>
5.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 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li> </ul>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li> </ul>
7.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입국</li> <li>○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 이수 (16시간 이상, 취업교육기관)</li> </ul>
8.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고용노동부)</li> <li>○ 고충상담, 무료교육 서비스 제공(고용노동부, 인력공단 등)</li> <li>○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장 변경 허용(고용노동부)</li> <li>○ 출입국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고용노동부간 업무 연계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li> </ul>

## 2.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안내

### 1)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자격

- 개 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지정
- 내 용 (①~⑦ 모두 충족 必)
  - ① 최근 3개월 평균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명 이상
  - ② 제조업 또는 일부 서비스업(상당수 서비스업은 제외)
  - ③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을 하였으나, 내국인근로자를 미채용(일부 채용 포함)한 업체
  - ④ 기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
  - ⑤ 내국인 구인신청일 2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업체
  - ⑥ 내국인 구인신청일 5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업체
  - ⑦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 2) 내국인 구인 방법

- 개 요
  - 내국인에게 고용기회 부여를 위해 내국인구인노력을 필한 중소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기회 부여
- 방 법 :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후 내국인 구인 노력
- 기 간 : 7일 ~ 14일 이후 신청
  - 워크넷 등록 시 14일 경과 必
  - 다만, 워크넷 등록 및 신문·방송 간행물 광고 병행(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3일 이상 오프라인으로 게재) 시 등 7일 경과
    - \* 신문·방송 시 광고내용 사본, 방송매체 계약서 또는 영수증 제출 必
- 유효기간: 고용센터에서 인증된 날로부터 3개월
- 기 타 : 내국인 구인시 생산직으로 신청 必(사무직 고용신청시 해당 無)

###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 개 요

- 중소기업 내국인근로자 고용규모(고용보험)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도 부여

○ 내 용

내국인피보험자수(고용보험)	고용 총한도	신규 외국인(당해년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	40명 이하	

- 1)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 한도의 20%까지 추가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 2) 인력부족업종(6개업종)은 총 고용한도 20% 상향
    - \* 2021년 인력부족업종(6개업종)
      -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금속가공 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 지방소재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등은 총 고용한도의 20% 상향
  - 4) 노동시간단축사업장은 고용한도 상향
    - 내국인 피보험자수(5명 ~ 49명) : 고용 총한도 20% 상향, 신규한도 30% 상향
    - 내국인 피보험자(50명 ~ 299명) : 고용 총한도 20% 상향, 3개월 전 대비 내국인 추가 인원만큼 신규 한도 상향
- ☞ NO 1 ~ NO 4 중 최대 3개항목 중복혜택 가능

※ 2021년도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지역

-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②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 ③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 ④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 당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상위 10%인 시·군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지역>**

구 분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경기도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구리시
경기도 내 '중소 제조업체 수 /인구 수' 기준 상위 10% 시·군	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서울·인천·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 중 「소득세법상 벽지	-

**\* 기타사항**

- 2021년도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제외된 경우에도,
  - 2020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유지는 물론, 근로계약 연장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음

#### 4) 뿌리산업확인서 발급

- 개요
  - 뿌리산업확인서 보유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확대
- 대상
  - 주철관 제조업(24131), 금속열처리업(25921), 도금업(25922), 분말야금제품 제조업(25911), 금속성형기계제조업(29223) 등의 중소기업
- 발급 방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또는 전화(Tel 02-2183-1615)로 신청
- 혜택 : 외국인근로자 총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및 신규 고용허용한도 1명 추가

#### 5)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 개요 : 한국정부와 MOU 체결한 아시아 개발도상국가 16개국
- 국가(16개국)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국가별 도입규모
  - 국가별로 구직자별 명부규모 배정(절대적이지 않음)되고 있으며, 동 명부 규모는 사업주의 선호에 따라 결정
- 선호국 외국인근로자 선정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시 선호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로 신청
  - 단, 외국인근로자 선택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시(합격업체)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변경해 신청 가능(상황에 따라 가능)

## 6)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 신청

### ○ 개 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유관기관에 제출

○ 신청 시기 : 2021년 2월(1일~18일), 4월(1일~15일) / 하반기 추후 공지

○ 신청 기관 : 관할 고용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또는 EPS 직접 신청

### ○ 고용허가서 발급前 제출서류(중소기업중앙회)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⑦ 사진 파일(회사 전경, 공장 내·외부 / 기숙사내 소화기, 화재감시기) 등

### ※ 고용허가서 발급後 제출 서류(중소기업중앙회)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② 위임장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 7)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설정

○ 개 요 : 수습기간(1개월~3개월)을 설정하여 최저임금 90% 지급

### ○ 대상 업무

- 가능업종 : 기계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섬유·의복 생산직,  
식품 가공·생산직,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 불가능업종 : 제조단순직

### ☞ 예시)

\* 제품 단순선별, 상표부착, 단순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 및 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시

☞ 수습기간중임에도 최저임금의 100% 지급 **必(수습기간 적용X)**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 수행시

☞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수습기간 적용O)

- 신청하는 법

- ① 워크넷 : 내국인 구인 노력 시 상기 표를 참고하여 올바른 직종 선택하여 구인
-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내용 작성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작성 시 [구인사항 - 모집직종] 란에 실제 업무에 따라 올바른 직종을 기재
  - 신청서상 [근로조건 - 임금 및 지급방법 - 수습기간 중 임금 란에 활용 내용 기재
- ③ 고용허가신청서 본회 제출

8)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신청

○ 개요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내용을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서에 기재하고 본회 제출시 숙식비 공제(가능)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상한

1)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20%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 식사는 1식 이상 제공시 공제 가능

2)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

○ 신청하는 법

- 숙식비 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허가서 신청서 작성 시 [근로조건 - ③②숙식제공] 란에 있는 제공 여부와 근로자 부담금액을 확실히 기재하여 신청
- 숙식비 사전 및 사후 공제는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는 신청서 숙식제공 란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 부담금액 내에서 적용 가능
- \* 아울러 숙식비 사전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자국어로 된 '공제 동의서' 징수 必

## 9)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선정 기준(점수제)

- 내용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요건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 인력을 배정하는 “점수제” 실시
- 점수 산정 기관 : 고용센터
- 산정 방법 : 고용센터가 확보한 업체 DB를 활용하여 요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
- 점수제 배정 내용
  - 1) 기본항목 : 100점 만점
    - ①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 30점
    -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 : 30점
    - ③ 신규 고용 신청인원(작을수록 고득점 부여) : 20점
    -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 : 20점
  - 2) 가점 항목
    - ① 산재보험 가입의무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시 : 최대 2.5
    - ② 우수 기숙사 설치 운영사업장 : 최대 5점(2년간)
    - ③ 사업주 교육이수 사업장 : 2점
    - ④ 위험성 평가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 1.5점
    - ⑤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전환 사업장 : 2점
    - ⑥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가입 등 : 1.5점
  - 3) 감점 항목
    - ① 안전보건상 조치의무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시 : 10점(2년간)
    - ②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 최대 10점
    - ③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 최대 5점
    - ④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사업장 : 최대 10점
    - ⑤ 기숙사 정보 미제공 및 허위정보 제공시 : 3점
    - ⑥ 산재 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각 3점
    -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업장 : 1~5점

### ※ 동점 사업장시 우선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 ① 내국인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 ②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 인원이 적은 사업장
-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 ⑤ 전산추첨



## 10) 외국인근로자 선택

- 개요
  - 고용센터가 접수제에 따라 합격업체를 발표하면, 업체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선택
- 고용센터 방문시 지참 서류
  - 업체 대표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업체 직원(고용보험 가입직원만 가능)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회사 사용인감
- 절차
  - 고용센터에서 신청일 4주차 금요일 14:00 업체 신청자(담당자) 핸드폰으로 문자(업체의 고용센터 방문일시 등) 발송
  - 업체는 지정된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
  -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이력서(신청인원의 3배수)를 보고 선택
  - 고용센터는 이후 업체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 11) 수수료 납부

- 개요
  -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수수료 납부 必
- 내용
  -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시 대행수수료 : 341,000원(1인)
    - \* 통역 등 서비스 추가시 76,000(3년) 추가
    - \* 해당 대행수수료에서 10~19.5만원은 취업교육비로 업체에 환급되어 실제 업체 부담액은 14만원~24만원대임
- 절차

직접대행	간접대행
① 중앙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 신청	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 신청
② 합격업체 발표	② 합격업체 발표
③ 고용센터에 방문(외국인근로자 선택 등)	③ 고용센터에 방문(외국인근로자 선택 등)
④ 수수료 입금 가상계좌 발급	④ 중앙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 신청
⑤ 수수료 납부(1차 3일내, 2차 7일내)	⑤ 수수료 입금 가상계좌 발급
	⑥ 수수료 납부(1차 3일내, 2차 7일내)

\* 본회에 신청했어도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정부방침)

## 12) 수수료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 개요
  - 신규 외국인근로자 수수료 입금시 전자계산서 발급
- 발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했어도 동 기관에서 수행)
- 발급절차
  - 중소기업중앙회에 외국인근로자 신청
  - 접수제에 따라 합격업체 선정
  -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선택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중기중앙회에서 가상계좌 발급
  - 업체의 수수료 납부
  - 산인공에서 이메일 또는 SMS문자메세지로 인증번호 발송(입금후 3일 이내)
  -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사이트(www.webtax21.com) 접속후 사업자번호, 인증번호 입력하고 전자계산서 출력
- 문의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Tel:052-714-8548)

## 13)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 개요
  -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마약검사와 관련, 업체는 건강검진기관에 마약검사비(약 3만5천원) 선입금하고 추후 외국인근로자에게 징수
    - \* 마약검사비 공제동의서는 취업교육기간중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징구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 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
  -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절차
  - 마약검사 시행안내(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기관)
  - 업체에서 마약검사비 납부
  - 건강검진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마약검사 실시(입국 1일차)
    -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에서 단체 마약검사를 실시한 경우 사업장에 **마약검사확인서는 미교부**(검진기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직접 전산통보)
    - \* 개별 검진기관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미개봉** 상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제출 **必**
  - 출입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업체 신청 必)

## 14) 사용자 교육

- 개요 :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수업체 대상 교육
- 교육시기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최종일 (외국인근로자 인수일)
- 교육장소 :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장소
-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 개요 및 근로기준법 등
  - 불법체류 방지 및 근로개시 신고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사용자의 의무·권리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방법
  - 취업교육비 환급절차
  - 기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한 팁
- \* 교육을 위한 신청절차 不要

## 15)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수

- 개요
  -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교육(2박3일)수료후 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 인수
- 인수자 : 사용자 또는 사용주의 대리인(회사직원, 가족(가족증명서상))
- 인수시 제출 서류
  - 도장(법인:사용인감, 개인사업자:대표자도장)
  - 회사명판(고무인)
  -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명의): 출국만기보험 계약용
  -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인수시)
  - 신분증 사본(사용자 또는 대리인)
    - \* 교육장(인수장소)에서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약정 체결(예정)
- 인수절차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 안내(입국 전주 금요일)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2박 3일)
  - 업체에서 관련보험 체결(교육장) 및 외국인근로자 인수(교육장)

## 16) 고용허가서 재발급(외국인근로자 교체)

- 개요 : 당초 고용하기로 한 외국인근로자가 업체에 배정되지 못한 사유 발생시 다른 외국인근로자로 교체해 입국절차 진행
- 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계약체결 거부
  - 외국인근로자의 미입국(출입국위반사실 발견, 입국거부, 입국포기 등)
  - 입국후 취업교육기간중 건강문제로 강제출국(매독, 결핵)
  - 사업주 인도전 이탈(공항이탈, 취업교육중 이탈)
- 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미배정 사유 발생 및 업체 안내
  -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외국인근로자 교체 통보(전화)하고 대체신청 서류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른 외국인근로자로 입국절차 진행

## 17) 출국 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체 신청

- 개요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4년 10개월)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신규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
- 고용 센터 신청
  - 신청 기간 : 체류기간 18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
  - 사전 절차 : 내국인구인등록(워크넷) 14일 必
  - 제출 서류
    - 출국예정신고서, 출국항공권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회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기간에 신청
  - 제출 서류
    - 출국예정사실확인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수수료 : 1인 341,000원(통역 등 편의제공 포함시 1인 76,000원 추가)

## 18) 수수료 환불

- 개요 :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업체사정 또는 외국인근로자 사유 등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곤란한 경우 수수료 환불
- 환불처 : 업체 신청시 계좌(법인, 대표)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환불 신청서(→본회 팩스신고)
- 사유별 환불내용 [신규, 특별한국어시험 외국인근로자]

환불 사유	환불 기준 등	환불 금액
○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 휴폐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채용취소 등	○고용허가서 발급 전	○수수료 전액 - 도입위탁비(60,000원) - 각종신청대행비(86,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편의제공비(76,000원)
	○고용허가서 발급 후 또는 입국 전	○취업교육비(195,000원) ○입국후각종신청대행비(30,000원) ○편의제공비(76,000원)
	○입국 이후	○잔여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입국 후 각종신청대행비(30,000원) ○편의제공비(76,000원)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 외국인근로자나 송출기관, 대행기관 등의 귀책사유인 경우		○수수료 전액 - 도입위탁비(60,000원) - 각종신청대행비(86,000원), - 취업교육비(195,000원) - 편의제공비(76,000원)
1.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인도 불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외국인근로자 인수일로부터 -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한 경우	
3. 제2호의 기간 외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14일 이후) 등이 발생한 경우		○잔여 체류기간을 계산하여 환불 - 입국후 각종신청대행비(30,000원) - 편의제공비(76,000원)

(참고)

## 자동차 정비업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내용(2015 ~ 현재)

- 자동차정비 사업장의 고용허가 여부 판단(고용센터)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은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이 가능하여 제조업(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302)」)에 해당될 수도 있어 고용센터는 아래의 서류를 통해 자동차의 판금·용접·도장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 필수 서류(중소기업)
  - ① 사업자등록증
    - “사업의 종류”의 “업태”에 「제조」 및 “종목”에 「자동차판금,도장 및 개조」 확인
  - ②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사업의 종류”에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 확인
  - ③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전기요금 청구서
    - “고객사항”란의 계약종별에 「산업용」이 명시된 청구서가 있는지 확인 후 “계약전력”에 명시된 수치가 “일반용 전력 청구서”에 명시된 “계약전력” 수치보다 많은지 확인
    -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분류에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이 제조업(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산업용전력 공급
    -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2조에 따르면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업의 경우 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의 부속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선하는 경우로서 조립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산업용전력 공급

## II

#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 1. 재입국특례자(舊 명칭 성실근로자)

- 도입 프로세스 -

1. 재입국 특례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요건 확인</li> <li>- 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자격 모두 해당 必</li> </ul>
2. 재입국만료자 확인서 발급(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에서 재입국만료자 확인서 발급</li> <li>- 체류기간 3개월~7일 이전 업체에서 신청 必</li> </ul>
3. 재입국특례자 대행신청 (업체 → 중소기업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 신청</li> <li>* 1인당 수수료 205,000원(편의제공 포함시 281,000원)</li> </ul>
4. 출국(외국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입국만료자 확인서 발급후 1개월 이내 출국 必</li> <li>○ 외국인등록증 반납(공항에서 출국심사시)</li> </ul>
5. 귀국신고 등 (외국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출기관에 입국후 7일 이내 귀국신고 必</li> <li>○ 송출기관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참여 必</li> </ul>
6. 입국 및 건강검진 (외국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출기관 계획에 따라 국내 입국(출국후 3개월 이후)</li> <li>○ 입국 당일 건강검진 참여</li> <li>* 단, 법개정시 1개월로 단축(예정)</li> </ul>
7. 외국인근로자 인수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체결(입국 당일)</li> <li>○ 성실근로자 인수</li> </ul>

## 1) 도입 목적

### ○ 개요

- 국내 취업활동기간동안(4년10개월)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12.7.2. 시행)

\* 단, 2021년 법개정시(예정) 출국 1개월후 재입국 가능

### ○ 효과

- 중소기업 : 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통한 생산활동 지원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필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숙련도가 향상된 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 고용한도 : 신규 고용한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 : 기술 습득 지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 (연령 제한 없음) 한국어능력시험 면제로 입국 연령 제한 없음
  - (출국 3개월 경과 후 재입국) 다른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와는 달리 출국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2) 신청 자격

### ○ 업체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 휴·폐업 등(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마지막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 체류기간 내 자진귀국 할 것
- 재입국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 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 요건에 적용 必



### 3) 고용센터 신청

○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 신청 기간 : 성실근로자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 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 서류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 신청서,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출국예정사실 신고서

\* 항공권 티켓사본(코로나19로 잠정적으로 제출 불필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후 1개월내 출국 必

### 4) 대행신청

○ 본회에 재입국특례자(舊명칭 성실근로자) 대행 신청

- 신청 서류[고용허가서 발급후]

· 대행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필수	근로자 도입위탁	·출입국지원, 건강진단, 사업주 인도		119,000원	
		*인도장소: 경인지역[ ], 대전지역[ ], 대구지역[ ]			
선택	각종 신청대행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이하 수령 포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재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입국전	86,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등	재입국자 고용 시	43,000원 (3년) 입국후	
	편의 제공	·통번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전용보험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76,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100원/잔여체류기간(월)	

## 5) 외국인근로자 수행 업무

### ○ 국내에서 수행 업무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전\* 반드시 출국
  - 업체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한 날 이후 1개월 이내 출국 必
- 출국 당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반납처:공항 출국심사대)

### ○ 송출국에서의 수행 업무

- 자국으로 출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 必
- 송출기관이 시행하는 건강검진 참여
- 송출기관 입국계획에 따라 국내에 입국

## 6) 재입국특례자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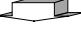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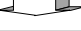



- 개요 : 입국 당일 업체에서 재입국특례자 인수
- 인수자 : 사용자 또는 사용주의 대리인(회사직원, 가족(가족증명서상))
- 인수시 제출 서류
  - 도장(법인:사용인감, 개인사업자:대표자도장)
  - 회사명판(고무인)
  -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명의): 출국만기보험 계약용
  -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인수시)
  - 신분증 사본(사용자 또는 대리인)
    - \* 교육장(인수장소)에서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약정 체결
    - \* 마약검사 결과는 추후 업체에 통보
- 인수절차
  - 산업인력공단에서 성실근로자 입국 안내(입국 1주전)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건강검진(입국 당일)
  - 업체에서 관련보험 체결 및 외국인근로자 인수(입국 당일)

### ※ 재입국특례자(舊 성실근로자) 자격요건 변경(2021년 하반기 적용)

-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3개월→1개월)
- 재입국 대상 확대  
(4년10개월동안 동일사업장 근무→동일업종 사업장 이동에도 기준충족시, 숙련성 인정시)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책임 사유로 사업장 변경한 경우에도 직업안정기관장의 인정시 적용 가능)

## 2. 특별한국어시험 외국인근로자

### - 도입 프로세스 -

<p>1.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체류 및 출국(외국인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고용 외국인근로자</li> <li>○ 자발적으로 자국으로 출국(사업자변경자 가능)</li> </ul>
	
<p>2. 한국어시험 응시 및 합격 (외국인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시행되는 특별한국어시험 합격</li> <li>○ 외국인근로자 연령(만18~39세) 등 부합 필요</li> </ul>
	
<p>3. 최종업체에 고용기회 부여 (고용센터→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에서 최종 업체에 고용여부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S 자동발송 및 유선으로 안내</li> </ul> </li> <li>* 최종업체에서 거부시 해당 외국인력은 신규와 동일하게 진행</li> </ul>
	
<p>4. 해당 외국인 고용 여부 결정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외국인근로자 고용결정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구인노력(14일) 이후 신청</li> <li>- 고용센터에서 통보한 25일 이내 신청 필</li> </ul> </li> </ul>
	
<p>4-1. 고용센터에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거시설표 등 제출</li> </ul> </li> <li>○ 본회에 대행 신청</li> </ul>
	
<p>5. 사증 발급 및 입국절차 (본회↔출입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회는 출입국 등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li> <li>○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력에 대해 건강검진 등 실시</li> </ul>
	
<p>6. 입국 및 취업교육 (본회↔외국인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후 6개월 이후 해당 외국인근로자 입국</li> <li>○ 본회는 해당 외국인력에 대해 취업교육 등 실시</li> </ul>
	
<p>7. 외국인근로자 인수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체결(입국 당일)</li> <li>○ 외국인근로자 인수</li> </ul>

## 1) 도입 목적

### ○ 개요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재입국 제한기간(6개월)은 유지하되, 동 제한기간 동안 한국어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입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인력난 완화 지원
- 자진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 방지 및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 2) 자격 요건

### ○ 개요

- 외국인근로자는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제한 요건 부합 必
-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송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해야 재입국 가능

### ○ 특별한국어시험 개요

- 응시 자격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가 재고용 되었던 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 \* 성실근로자는 '체류기간' 내, 특별한국어시험 대상자는 '취업활동기간' 내에 출국 必
  - 만 18세 ~ 39세 이하
  - 범죄경력이 없는 자, 불법체류 경력 없는 자, 송출국에서의 출국 제한이 없는 자
- 응시 장소와 주기
  - 자국에 설치된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CBT)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실시 대상국가
  - 전 송출국(16개국)에서 실시

###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최종 사업장 취업 요건

- ⇒ 해당 송출국에서 특별한국어시험 합격
- ⇒ 출국 전 최종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업종과 출국 전 최종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 \* 임의알선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절차 진행

### 3) 고용 신청절차

#### ○ 개요

- 특별한국어시험 합격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종 근무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업체에 고용 기회 부여
  - 재고용 만료자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지정알선 신청 불요
  - 지정알선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종전 사용자에게 SMS 자동발송 및 유선으로 안내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접수 이후에는 일반적인 고용허가서 발급절차와 동일
    - ☞ 최종 근무 업체가 고용거부시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신규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

#### ○ 신청 절차

- 관할 고용센터에서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여부 문의 [업체에서 사전에 문의 不要]
- 고용센터 통보 이후 고용의향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
  - 내국인구인노력 14일(워크넷)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 통보한 25일 이내에 신청 必
- 고용센터 제출 서류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력 주거시설표

### 4) 대행신청 절차

- 시기 : 고용센터의 고용허가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서류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제출
  -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 ③ 위임장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수수료 : 1인 341,000원(통역 등 편의제공 포함시 1인 76,000원 추가)

### 5) 입국 및 취업교육 후 인수절차

- ☞ 신규 외국인근로자와 동일

〈 성실근로자 및 특별한국어시험 근로자 비교 〉

구 분	재입국특례자(舊 성실근로자)	특별한국어시험 근로자
적 용 대 상 자	①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 100인 미만 제조업에 근무한 자 ③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자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기간내 자발적으로 귀국한 자
실 시 대 상 사 업 장	100인 미만 제조업	제한 없음
한 국 어 시험	면제	분기별 1회 이상 시행되는 한국어시험에 합격
취 업 교 육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재 입 국 제 한 기 간	출국일로부터 3개월 * 법개정(2021년 협의중)시 1개월로 단축	출국일로부터 6개월
중전 사업장 재 근무 여부	반드시 출국 전 근무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해야함	출국 전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 가능
사 용 자 의 사 전 신 청	필 요	불필요
사 용 자 의 내 국 인 구 인 노 력	불필요	필 요
실시대상국가	제한 없음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이 설치된 송출국가 중 특별한국어 시험에 동의한 국가
시 행 시 기	2012. 7. 2.부터 시행 중	2011. 12월부터 시행중

※ 코로나19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일률적으로 체류기간이 50일 자동 연장되고 있음(2020. 4. 1 ~ 2021. 2. 28 현재)



##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전환

### 1. 제도 개요

-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0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150명) 운영
  -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 2. 고용부 추천 쿼터(연간 400명 이하) 선발 기준

-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必

-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4개 제조업종
-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나.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 ① 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
-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 다.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1점),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 3.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매분기 마지막 달 신청접수(약 1주일 예상)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문의: 고용센터 외국인업무 담당자
-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보통 3일 예정, 접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접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 <붙임 1>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점수요건 :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자격증 소지 <sup>㉠</sup>			기량검증 통과 <sup>㉡</sup>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10	10	5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30세	~ 33세	~ 36세	~ 39세
배 점	20	17	14	11	8	5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나. 선택항목 : 최대 11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sup>㉠</sup>			국내 자산 <sup>㉡</sup>		
	1억원이상	6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sup>㉠</sup>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sup>㉡</sup>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sup>㉠</sup>		국내 연수경험 <sup>㉡</sup>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sup>㉠</sup>			중앙부처 추천 <sup>㉡</sup>	읍, 면지역 근무 <sup>㉢</sup>			사회공헌 <sup>㉣</sup>		납세실적 (300만원 이상) <sup>㉤</sup>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표 창	봉 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sup>㉠</sup>			기타 국내 법령 위반 <sup>㉡</sup>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근로보장자 수)	일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 개 요

-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한 업체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이수한 취업교육비(195,000원) 중에서 일부를 환급

## ○ 환급 금액 : 10만원 ~ 19만5천원

## ○ 환급 시기 :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3~4개월

## ○ 환급 근거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은 사용자 부담으로 실시되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해당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훈련비용으로 지원 가능하므로 취업교육비 중 일부금액 환급 가능

## ○ 환급기관 : 해당 교육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2017. 3. 28일 이후 인도·인수한 외국인근로자 취업 교육에 대해 사업주에게 환급금 지급 (2017. 3. 28일 이전 외국인근로자 취업 교육비 환급은 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서 수행)

## ○ 훈련비 납부 및 환급절차

- ① 사업주와 취업교육기관 간 교육훈련위탁계약 체결
- ② 사업주가 취업교육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교육훈련비 납부
- ③ 취업교육기관이 산업인력공단에 정부지원금 신청 및 수령
- ④ 취업교육기관에서 사업주(회사) 계좌로 환급비용 입금

## ○ 본회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통장계좌번호 기재)
- \* 본회가 외국인근로자 인수일 통보시 해당서류 징구(예정)

※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업체 배정후 환급은 3~4개월 소요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구 분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도 입 적 목 적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질병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비용 충당
근 거	외고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외고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가 입 대상자	사 용 자		외국인근로자	
적 용 사업장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용자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장	-	-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		-	-
피보험자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3개월 이내
보 험 금 납부방법 및 규모	매월 적립 월통상 임금의 8.3%	일 시 금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일 시 금 1년/약 20,000원 (연령 상환에 따라 차등)	일 시 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보 험 금 지급사유	1년 이상 근무한 외국 인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사용자의 임금체불 (400만원 한도, 2021년 부터 적용)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외국인근로자출국 (일시출국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미가입시 벌칙규정	500만원 이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80만원
문 의 처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서울보증보험(주) 02)777-6689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2. 외국인근로자 4대 사회보험

구 분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도입목적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보건증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 실업 급여지급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근 거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			
적 용 사업장	의무가입	의무가입	임의가입 (가입신청자에 한함)	국가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보험금 납부방법	매월 적립	연1회	매월(외국인력)	매월
보험료 부담자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사용자(100%)	업체, 외국인근로자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납부 보험료	·보험료 부담자 각기 표준월보수액 × 6.07%(3.035%)	·근로자 추징임금총액 × 보험요율 ·업종별로 상이 (임금총액의 0.7% ~ 34.0%)	·업체 근로자추징임금총액 × 0.25~0.85% ·외국인근로자 월급여 × 0.65%	·보험료 부담자 각기 표준월소득액 × 4.5%(9.0%)
보험금 지급 및 혜택	·외국인근로자 질병발생시 진단, 치료, 재활지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	·실업예방, 고용촉진 재취업지원	★ 출국시 반환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키르기스스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문의처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재지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연락처	1577-1000	1588-0075	1350	1355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사업장 가입 및 지역가입 당연 적용 (3개국)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이나 지역가입은 적용 제외(6개국)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모두 적용 제외(7개국)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단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근로자 (E-9)는 가입 면제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 당연적용 2개국(우즈베크 제외) 및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6개국은 국민연금 가입 필수

### 3.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내용

#### ○ 개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有

#### ○ 사용자 가입보험

##### 1) 출국만기보험 : 삼성화재(Tel 02-2261-8400)

- 내용 : 퇴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적립
- 방법
  - ① 외국인근로자 인수당일 연수원(취업교육기관)에서 약정서 작성
  - ② 외국인근로자 통장으로 급여 입금
  - ③ 약점 금액(통상임금의 8.3%)이 외국인근로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 2) 임금체불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Tel 02-777-6689)

- 내용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가입 必
- 방법
  - 외국인근로자 인수前 관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약정서 작성 및 15일 이내 보험금 납입(1인, 1년 21,900원)
  - \* 재고용시 업체가 보증보험회사와 별도로 연락해 체결

#### ○ 외국인근로자 가입보험

##### 1) 귀국보험 : 삼성화재(Tel 02-2261-8400)

- 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항공권 구입을 위해 가입
- 방법
  - ① 외국인근로자 통장으로 급여 입금
  - ② 국가별 약정금액(40~60만원)이 첫달에 자동 이체

##### 2) 상해보험 : 삼성화재(Tel 02-2261-8400)

- 내용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에 대해 보상
- 방법 : 외국인근로자 인수후 15일 이내 보험회사에 약정금액 납부(1인, 1년 2만원)

## 4. 출국만기보험 및 체불보증보험 관련 안내

### 1) 출국만기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경우

#### ○ 개 요

- 신규외국인근로자 고용시에는 출국만기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일부 가입 면제 사유 발생

#### ○ 가입 제외

-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  
(단 재고용으로 1년 이상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일을 기준으로 소급 가입 必)

### 2)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출국만기보험 및 체불보증보험 가입 방법

#### ○ 개 요

-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가입대상인 출국만기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방법 안내

#### ○ 절 차

- 외국인근로자와의 재고용 계약 체결
- 출국만기보험 : 삼성화재에 연락해서 약정서 체결 및 보험료 매월 납부
- 체불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해 약정서 체결 및 보증료 납부

### 3) 외국인근로자 체불보증보험 청구 방법

#### ○ 개 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에 체불이 발생하게 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체불 해소방법 안내

#### ○ 절 차

- 고용센터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금액 확정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서울보증보험에 체불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
- 서울보증보험에서 최대 200만원 지급
- 서울보증보험은 지급금액에 대해서 사용자인 중소기업에 구상권 청구

#### 4) 출국만기보험 수령 방법

##### ○ 개요

- 납부한 출국만기보험을 업체가 수령하는 방법
- 납부한 출국만기보험을 외국인근로자가 수령하는 방법

##### ○ 업체 수령

###### - 사유

- 고용한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한 이후 출국, 타사업장으로 근무 장소 변경, 이탈한 경우

###### - 신청 절차

- 출국만기보험 수령 사유 발생
- 삼성화재(Tel 02-2261-8400)에 신청서류 팩스 전송
- 업체 계좌로 출국만기보험금 입금

##### ○ 외국인근로자 수령

###### - 사유

-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완전 출국하는 경우 또는 타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망하는 경우

###### - 신청 절차

- 출국만기보험 수령 사유 발생
- 삼성화재(Tel 02-2261-8400)에 신청서류 팩스 전송
- 출국당일 출국장소(인천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또는 출국후 14일 이내 본국에서 수령
- \* 출국만기보험 보험금 소멸시효는 3년이며,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은 휴면 보험금관리위원회에 귀속



## 5) 출국만기보험 관련 퇴직금 차액

### ○ 개요

-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실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액의 차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 必

### ○ 근거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 3항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 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외국인고용법 제16조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위반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퇴직금 확인

- 실제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 이용 → 엑셀전환 및 출력 가능
-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예상 수령액 안내문 팩스 요청
- 퇴직금 차액 지급 : 퇴직금 차액 = 실제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 ○ 퇴직금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모의계산 → 나의 퇴직금 계산
  - \*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직접접속
- 퇴직금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Tel : 1644-1350)





# 제 4 부

## 외국인근로자 관리





### 1. 고용허가기간 연장 (법 제9조 제3항)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3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 사용자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서류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근로자 서명 필),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2.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에 따른 재고용 (법 제18조의2)

- 사용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 사용자는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기간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까지
- 신청요건 : 허용 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고용 가능
- 신청서류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 서명 필),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3. 사업장 변경 (법 제25조)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
-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기간 (3년) 내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1년10개월) 중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

○ 사업장 변경 허용 기준

-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징계 해고)
- ②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③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  
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법 제17조) / ※ 고용부(출입국) 통합신고 가능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일전)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장에게 신고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 [별칙]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고용변동 신고사유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한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불가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신고처 : 국번없이 1345
- 온라인 진행과정
  - \* (사업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사무명을 “H2, E9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신고)”를 선택하여 민원 신청
  - \* (법무부/고용노동부) 접수 및 민원처리
  - \* (사업주)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 처리결과 확인

## 5. 사업장 변경 대기중인 외국인근로자 채용 (법 제25조)

- 사업장 변경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
- 사업장 변경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교부받고 3개월내에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서만 가능** ⇨ 불법 브로커 개입 방지 위해 **지정알선\***은 엄격히 금지
  - \* 지정알선 :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지 않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구인·구직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을 약속한 후 고용센터에 알선을 요청하는 경우
- 고용센터는 구인 사용자에게 1회에 구인인원 최대 3배수 이내의 외국인을 추천, 추천받은 사용자는 알선 유효기간 3일 내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센터에 회신
- 구직 외국인에게는 알선된 사업장의 명칭과 연락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 변경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로 SMS 문자 통보
-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하면 발급 요건 및 구직 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 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 사업주가 입국 전에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
- 고용허가 취소사유 (법 제19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주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업주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 (법 제20조)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7.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 전국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와 고용센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불법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 각 고용센터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한 후 점검의 목적, 기간, 내용, 준비할 서류 등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
    - 근로개선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 실시
    -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기숙사 등) 시설점검을 병행하고 우수기숙사로 선정된 경우 최대 2년간 점수제 가점 부여
  -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불시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



## 1. 외국인 등록 (법 제31조)

## □ 외국인등록 신청

- 외국인근로자(외국인)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업체의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 ☞ [별칙]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신청서류

- ① 통합신청(신고)서(서식 별첨) 1부
- ② 여권
- ③ 사진(칼라) 2매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판]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수수료 : 30,000원/1인
  -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강진단서, 산재보험가입영수증 추가 징구
- ⑥ 고용허가서 사본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⑦ 마약검사확인서
  -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에서 단체 마약검사를 실시한 경우 사업장에 **마약검사확인서는 미교부**(검진기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직접 전산통보)
  - \* 개별 검진기관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미개봉** 상태로 제출

## □ 참고 사항

-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부, 여권에 외국인등록필 날인
-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제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별칙]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 2. 체류기간 연장 허가(근로자) (법 제25조)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 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 필요
- 신청서류 : 통합신청(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보증인은 사용자)  
☞ 수수료 : 온라인 신청시(50,000원/1인), 방문 신청시(60,000원/1인)

## 3. 고용변동사유발생 신고(사용자) (법 제19조) / \* 고용부(출입국) 통합신고 가능

-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이탈·기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시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신청서류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해당사유별 확인서류(사망 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신고처 : 국번없이 1345
- 온라인 진행과정
  - \* (사업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사무명을 “H2, E9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신고)”를 선택하여 민원 신청
  - \* (법무부/고용노동부) 접수 및 민원처리
  - \* (사업주)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 처리결과 확인

## 4. 근무처 변경 허가(근로자) (법 제21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 개시
- 신청서류 :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근로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 5. 체류지 변경 신고(근로자) (제36조)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
- 제출서류 : 통합신청(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6. 외국인 등록사항의 변경(근로자) (법 제35조)

-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통합신청(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사유별 확인서류

## 7. 임시출국 (법 제30조)

-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중에 본국 방문을 위해 임시출국 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신청 절차 없이 재입국 할 수 있음
- 재입국기간 : 출국 후 1년 이내(체류기간 내)
- 출국교통비 : 외국인근로자 본인 부담
- 유의 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공지
  -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완전출국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서는 안 됨

##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음
-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 적용  
(차별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  
(사회보험) 산재보험(의무), 건강보험(의무), 고용보험(임의), 국민연금(상호주의)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은 생산성, 경력 등에 따라 차등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 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자가 보관할 수 없음
-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

## 2. 외국인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산정

### □ 근무 조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표준근로계약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기본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44시간)
- 유급휴일(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주48시간(52시간)

#### ☞ 주6일제(44시간) 근무제 : 5인 미만업체

- 주단위 : [8시간 × 5일 + 4시간(토) + 8시간(일)] = 52시간
- 월단위 : (52시간/7일) × (365일/12개월) = 226시간

#### ☞ 주5일제(40시간) 근무제 : 5인 이상업체

- 주단위 : [8시간 × 5일 + 8시간(일)] = 48시간
- 월단위 : (48시간/7일) × (365일/12개월) = 209시간

#### ☞ 주5일제(44시간) 근무제 : 5인 이상업체

- 주단위 : [8시간 × 5일 + 4시간(토) × 1.5시간 + 8시간(일)] = 54시간
- 월단위 : (54시간/7일) × (365일/12개월) = 235시간

#### ○ 시간외(연장) 근무시간

- 외국인근로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 (기존 68시간→변경 52시간 내)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

〈당초 시행시기〉

① 30 ~ 300인 미만 : 2020년 1월 1일부터

② 5 ~ 3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부터

☞ 단, 국회 합의에 따라 시행기간(①~②) 일정기간(1년) 유예

○ 휴 일

- 법정휴일

- 주 휴 일 : 1주간의 소정근로자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회 이상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 휴일
  - 약정휴일 :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
  - 휴일의 대체 : 사용자와 근로자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음

○ 연차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간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외국인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사용된 휴가일수는 만 1년 근로 후 발생하는 15일 유급휴가에서 차감

□ 퇴직금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채용하는 사업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 출국만기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퇴직금보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일 적립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퇴직금 지급 (출국만기보험 청구)

-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사에 적립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 급여 산정 및 지급

- 기본 급여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연장 근무수당
  - 기본 근무시간(1일 8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야간 근로수당
  - 야간시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근무)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휴일 특근수당
  -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은 평일 근무수당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시급 100% 지급, 시급의 100의 50% 미가산)

### ※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은 각각 시급 100% 외 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중복 지급 必

### 3.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등

#### □ 생활 지원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 및 생활정착이 내국인보다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기에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제공 및 주거지를 확보하여 지원 하는 것이 안정적인 취업생활에 도움이 됨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철저

-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라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  
☞ [벌칙]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강사를 지원 [무료강사 문의] 1644-3119

#### □ 외국인근로자 관리상 애로 처리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툼 또는 분쟁이 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작업거부, 폭행, 노동쟁의, 범법행위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필요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용자의 신고 시 유선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용자의 불법·부당 행위 및 외국인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한 조사, 조정, 관련기관 신고 등을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방문 시 사업주, 직장동료 등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내용을 신고인에게 확인 시킨 후 사실 결과에 따라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처변경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행위, 재해와 관련된 보상 등으로 인한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4. 외국인근로자 재해발생 신고 및 처리

#####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사고(산업재해)

###### ○ 산재사고의 처리 및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요양토록 조치하는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아닌 당연 적용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당연 적용요건에 해당되었다면 그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해도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 산업재해보상 지원 등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급여의 청구에 협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를 지급하여야 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외국인근로자가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필요)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또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재해외국인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장애가 남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 보험기관에서 보상금을 청구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휴업급여와 장애보상금은 반드시 외국인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통해 서면 지급받을 수 있음

##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이외의 사고

### ○ 산업재해외 사고의 처리 및 신고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신속히 치료 또는 요양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상해보험의 보상

- 외국인근로자는 업무이외의 사고발생에 따른 상해보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 이외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산재 및 산재 외 사고의 치료·요양 이후의 조치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치료·요양기간이 길어져 체류기간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도록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요양종결 후에도 장애정도가 심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장 이동 및 출국 가능
- 외국인근로자의 요양 및 치료가 종료되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처리 및 조치

### ○ 사망신고 등 사고처리

- 외국인근로자가 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 노동부(24시간내), 주한 대사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필요 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주한 대사관과 협의하여 유족 통보 및 유족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망사고를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 증을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회에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변동 등 신고서」와 사망진단서 (사본)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고, 사망에 따른 사후대책을 협의 바람

- 유족 또는 피 위임자가 임금청산, 연금관리공단의 일시반환금·유족연금·장의비 건강보험공단의 장의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장의비, 보험사의 귀국비용·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등 해당되는 보험금 등을 원활히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
  - 상속자격을 가진 자가 입국할 경우는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영문확인서(공증필)원본 및 근거서류(호적등본 등) 지참 안내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영문위임장 원본(공증필), 상속자 증명 영문확인서 원본(공증필) 및 근거서류(호적등본 등) 안내
- 사용자는 사망한 외국인근로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 송출국가(대사관 등), 장례대행업체 등과 협의하여 장례를 거행하고 장례를 마친 사체, 유골 또는 왜골, 유품, 유물은 본국으로 송환하여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사망자에 대한 병원비(진료비, 영안실사용료, 검사료 등), 장례비, 유해·유골 수습비 등은 유족이 부담. 다만, 보험금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는 수임자가 부담

#### ○ 재해발생 보고 및 산재보상금 신청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업무상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전화·FAX·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 ○ 사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상지원 등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 산업재해 이외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 해당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이 가해자 등 사고책임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사망보상금, 장례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 □ 용어 정의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재해를 말함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적용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법의 일부 적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로 정하고 있으며, 2000. 7. 1.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2000. 8. 5. 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강화

### □ 사용자의 의무

-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 (법 제5조)
  - ①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 ②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③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 ④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⑤ ①~④까지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의무 (법 제10조 제2항)
- ① 보고대상 : 사망,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② 보고방법 및 시기 :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중대재해의 경우는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별도 보고
  - ③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산업재해조사표'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작성하여 보존하여도 됨
-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법 제11조)
- 사용자는 법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등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안전표지 부착 등의 의무(제12조)
- 사용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차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경고 	202 산화성물질경고 	203 폭발성물질경고 	204 급성독성물질경고 
205 부식성물질경고 	206 방사성물질경고 	207 고압전기경고 	208 메달린물체경고 	209 낙하물경고 	210 고온경고 	210-1 저온경고 
211 유균형상설경고 	212 레이저광선경고 	213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4 위험장소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착용 	302 방독마스크착용 
303 방진마스크착용 	304 보안면착용 	305 안전모착용 	306 귀마개착용 	307 안전화착용 	308 안전장갑착용 	309 안전복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2-1 들것 	402-2 세안장치 	403 비상구 	403-1 좌측비상구 
403-2 우측비상구 	5. 분자별추가시	 <small>취발유해기양금 344</small>				

## 2.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 책임소재는 명확히 하고,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로 사업 종류, 규모, 근로자 수에 따라 적절한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총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현장소장 등)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 선임대상 사업장
  - 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단,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사업은 50명 이상 사업장
  - ②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 □ 관리감독자(제14조)

- 사용자는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생산업무 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벌칙]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 □ 안전관리자(제15조)

-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선임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단,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종류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 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에서 정하고 있음

-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 제외)의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 보건관리자(제16조)

-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선임대상 사업장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 5 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보건관리업무의 위탁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 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은 도급인·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 [별칙]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 지정대상 사업
  - ①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제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 ② 100명 이상인 제조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 설치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단, 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3. 유해위험예방조치

#### □ 안전조치(제23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위험요인의 유형
  - ① 기계적, 화학적 및 에너지 등 물적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작동방법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③ 작업장소가 특수한 위험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
- 주요 사고유형별 안전조치기준
  - ① 추락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42조)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②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14조) :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③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50조) :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
  -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보건조치(제24조)

-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보건상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 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건강장해 요인의 유형
  - ①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②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④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⑥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유해인자별 보건조치
  -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420조부터 제451조)
  - ②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452조부터 제497조의3)
  - ③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498조부터 제511조)
  - ④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512조부터 제521조)
  - ⑤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522조부터 제557조)
  - 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558조부터 제572조)
  - ⑦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573조부터 제591조)
  - ⑧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592조부터 제604조까지)

- ⑨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05조부터 제617조)
- ⑩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18조부터 제645조)
- ⑪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제646조부터 제655조)
- ⑫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56조부터 제666조)
- ⑬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67조부터 제670조)
- ☞ 해당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임

#### □ 작업중지(제26조)

-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작업중지 후의 조치사항
  - ① 사용자 :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함
    -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근로자·직상급자 :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③ 중대재해 발생현장 보존 :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면 안됨
    -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1조)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요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포함)
  - ④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및 산업보건의
  - ⑤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⑥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⑦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중 라.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참조 ※16시간 이상 교육 시(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경우 2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①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 정기 교육시간의 1/2이상 실시 가능
- ②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면제

☞ [벌칙]

- 일반근로자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 1차 위반 시 3만원, 2차 위반시 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 1차 위반 시 3만원, 2차 위반시 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 작업내용변경 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1명당) :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만원 과태료

□ 유해위험기계 기구 등의 안전보건조치

-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제33조) :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 1) 방호조치에 대한 사용자 조치사항 :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2)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기계·기구명	방호조치	기계·기구명	방호조치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고정식 방호가드

☞ [별칙]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대여하는 자 또는 대여받는 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별표 8)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 스크레이퍼 | 트렌치 | 페이퍼드레인머신 | 이동식 크레인 | 스크레이퍼 도저 | 향타기 | 리프트 | 타워크레인 | 파워셔블 | 향발기 | 지게차 | 불도저 | 드래그라인 | 어스드릴 | 롤러기 | 모터 그레이더 | 클램셀 | 천공기 | 콘크리트 펌프 | 로더 | 바깥굴삭기 | 어스오거 | 기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것

-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인증(제34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사용전 안전성 확인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불량품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여 제조·유통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에 관한 성능과 기술능력·생산체계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고 있음

- 사업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구입 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등에 관한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함

- 자율안전확인인 신고(제35조) : 종전 검사·검정제도 대상품목에서 생산기술이 보편화 되어 제품의 시험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과 기계·기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 제도와 차별화 및 제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마련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제36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검사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

- 제조 등의 금지 (제37조)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 또는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은 제조·주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됨. 다만,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음
  -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물질의 제조허가(제38조) :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지 아니한 석면·베릴륨 등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설비 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음
  -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석면조사(제38조의2)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작업전에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등을 조사함
- 석면해체·제거 작업(제38조의4)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안전하게 철거·해체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신고하여야 함

-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39조의2) :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40조) : 국내에서 최초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우리나라가 유해물질의 독성 실험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제41조)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 4. 근로자의 보건 관리

##### □ 작업환경의 측정 (제42조)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별칙]
  -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을 일부 누락하고 측정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1차 위반 시 3만원, 2차 위반 시 12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 측정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제외사업장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제9호에 따른 임시(매일 24시간 미만) 작업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을 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 환경측정만 해당)
-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제93조제1항 관련 별표 11의 4)
  - 화학적인자
    - 톨루엔, 페놀, 아세톤, 메틸알코올, 스티렌 등 유기화합물 113종
    - 구리, 니켈, 망간, 알루미늄, 카드뮴 등 금속류 23종
    - 황산, 질산, 불화수소, 수산화나트륨산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 염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가스상태물질류 15종
    - 석면, 크롬광 등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14종
    - 금속가공유 1종
  - 물리적인자 2종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고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6장)
  - 분진 6종 :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등 6종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인자

#### □ 근로자 건강진단(제43조)

- 근로자들은 작업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일반 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일반·특수·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를 작성·기록하며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전환 등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함
-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를 5년간 보존해야 함. 특히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해야 함



□ 역학조사 (제43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존의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기 어려운 신종 직업성질환을 밝혀내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함
- ☞ [벌칙] 거부, 방치, 기피한 경우 : 1차 위반시 1,5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0만원 과태료

□ 건강관리수첩 (제44조)

-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을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제도 도입
- ☞ [벌칙]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45조)

- 사용자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 ☞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46조)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 등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47조)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사람을 해당 작업에 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 기타 사항

###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48조)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용자에게 미리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정부가 이를 심사·확인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 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제33조의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가구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0***	식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의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 1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 공정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 하는 노(爐)로 용량이 3톤 이상
-------------------	---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건조설비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 안전보건진단 (제49조)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
- 안전보건진단 명령 대상사업장(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 중대재해(사용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49조의2)

- 화재·폭발, 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제도(PMS)에 따라 공정 안전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P SM) 제출대상 : 7개 업종\*은 전 보유설비, 그 외 업종은 21개 유해·위험 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공정을 설치, 이전 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 \* 7개 표준산업분류표 업종 : 원유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의 경우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를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비료제조업의 경우 제외),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2조)

- 법에 부여된 조치의무를 충실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은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유해위험요소를 직접 접하고 있는 생산현장의 근로자가 위법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 사용자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 서류의 보존 (제64조)

보존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 (법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9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시행규칙 제107조
5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 (법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94조)
	건강진단에 관한서류 중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107조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
	산업안전·위생지도사가 시행규칙 제1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제3항 (법 제64조제5항)
3년	산업재해 발생기록	법 제64조제1항 (법 제10조제1항)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법 제64조제1항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64조제1항 (법 제24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법 제64조제1항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6조)
	안전인증 관련 서류	법 제64조제2항 (법 제34조제6항)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	법 제64조제3항 (법 제38조의2)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64조제1항 (법 제42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64조제1항 (법 제43조)
2년	지정측정기관이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법 제64조제4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	법 제64조제1항 (법 제19조제3항, 제299조의2제4항)
	자율안전기준 증명서류	법 제64조제2항 (법 제35조제2항)
	자율검사프로그램 증명서류	법 제64조제2항 (법 제36조의2제2항)



## 부당·불법행위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내용

### 가. 과태료(출입국)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위반기간	과태료 금액
[사업주] 해고, 퇴직, 이탈 등 고용변동신고 (제19조) : 사유발생일 15일 이내 신고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200만원 이하
[근로자]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출국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제35조) / (제37조)	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	100만원 이하

### 나. 범칙금(출입국)

※ 94조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95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위반기간	과태료 금액
[근로자]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한 사람 (제17조1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 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제18조1항)	법 제94조 제7호, 제8호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 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제25조)	법 제94조 제17호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사업주]외국인등록증, 여권 압류 (제33조의3 1항)	법 제94조 제19호	1명	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19명 이하	2,500만원
		20명 이상	3,000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위반기간	과태료 금액
[근로자]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제18조2항)	법 제95조 제5호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근로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제21조1항)	법 제95조 제6호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근로자] 90일 이내 등록의무 위반 (제31조)	법 제95조 제7호	1개월 미만	2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근로자]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27조)	법 제98조 제1호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
		[근로자]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자 (제36조)	법 제98조 제2호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이하	70만원		
2년 이상	100만원		

**다. 범칙금(출입국)**

※ 94조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95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법조문	범칙금 부과 대상자	고용인원	과태료 금액(만원)				
			300	500	700	900	1,100
제94조 제9호	불법체류자 고용자 (18조3항)	1명	300	500	700	900	1,100
		2명	500	700	900	1,100	1,300
		3명	700	900	1,100	1,300	1,500
		4명	900	1,100	1,300	1,500	1,700
		5명	1,100	1,300	1,500	1,700	1,900
		6명	1,300	1,500	1,700	1,900	2,100
		7명	1,500	1,700	1,900	2,100	2,300
		8명	1,700	1,900	2,100	2,300	2,500
		9명	1,900	2,100	2,300	2,500	2,700

		10명	2,100	2,300	2,500	2,700	2,900
		11명이상 14명이하	2,300	2,500	2,700	2,900	3,000
		15명이상 19명이하	2,500	2,700	2,900	3,000	3,000
		20명이상 24명이하	2,600	2,900	3,000	3,000	3,000
		25명이상 29명이하	2,700	3,000	3,000	3,000	3,000
		30명이상 39명이하	2,800	3,000	3,000	3,000	3,000
		40명이상 49명이하	2,900	3,000	3,000	3,000	3,000
		50명이상	3,000	3,000	3,000	3,000	3,000
제95조 제6호	근무처 변경 않고 외국인 고용자 (21조2항)	1명	200	250	300	400	500
		2명	250	300	350	450	550
		3명	300	350	400	500	600
		4명	350	400	450	550	650
		5명	400	450	500	600	700
		6명	450	500	550	650	750
		7명	500	550	600	700	800
		8명	550	600	650	750	850
		9명	600	650	700	800	900
		10명 이상	650	700	800	850	1,000

#### 라. 벌칙(외고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외고법)

- (1)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제8조제6항)
- (2)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16조)
- (3)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19조제2항)
- (4)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제25조)
- (5) 금품을 받은 자 (제27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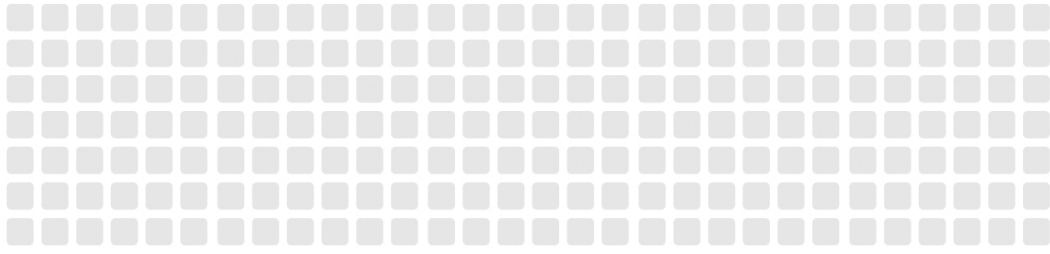
#### 마. 500만원 이하의 벌금(외고법)

- (1)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13조제1항)
- (2)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23조)

바. 과태료 부과기준(외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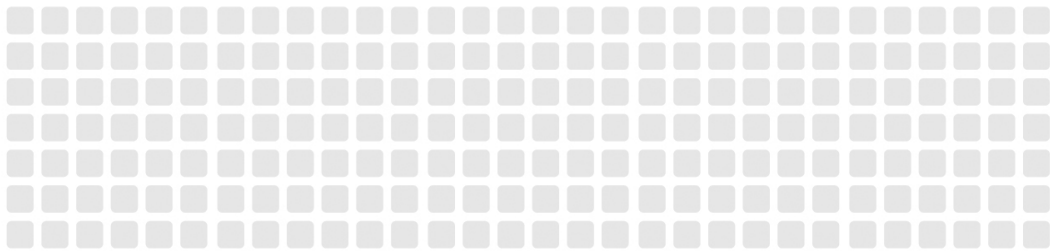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사용자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60	120	240
나. 사용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60	120	240
다. 사용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00	200	400
라. 사용자가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60	120	240
마. 사용자가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80	160	320
바.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80	160	320
사. 사용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60	120	240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100	200	400
자.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60	120	240
차.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60	120	240
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100	200	400
타.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100	200	400





# 부 록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국가별 기본정보 및 참고사항,  
각종 서식 및 연락처





□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기본정보

국 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정부형태	대통령제	대통령제	입헌군주제, 내각제
면 적	190만km <sup>2</sup> (한반도의 9배)	30만km <sup>2</sup> (한반도의 1.3배)	18만km <sup>2</sup> (남한의 1.8배)
인 구	2억 6400만명(2017)	1억500만명(2017)	1,601만명(2017)
G D P	1조155억불(2017) (3,847불/인)	3,136억불(2017) (2,989불/인)	222억불(2017) (1,384불/인)
민족구성	자바족(45%), 순다족 등 300여 종족	여러 민족간의 혼혈 대부분이 말레이계	크메르인(90%), 기타 소수민족(베트남, 중국 등)
언 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불어(50대 이상), 영어(청장년층)
종 교	이슬람(87%), 개신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카톨릭(83%), 개신교, 이슬람교, 기타	남방불교(95%), 기타
기 후	고온다습 몬순기후	고온다습한 아열대성기후	고온다습 열대몬순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이 1만 9천개이며, 동남으로 멀리 뻗어 있는 국토로 인해 각 섬마다 독특한 고유 문화 유지</li> <li>○인도네시아의 문화는 2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인도와 중국, 중동과 유럽,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li> <li>○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지배 탓에 본래의 토착 문화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들이 공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혼재하는 사회임</li> <li>○스페인의 영향으로 로마 가톨릭문화가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고 남부의 큰 섬인 민다나오에는 이슬람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은 크메르족이 90%이며, 크메르어가 공식 언어이다 나머지는 베트남계 5%, 중국계 1%, 기타 4% 등으로 구성</li> <li>○주요 종교로는 소승 불교(남방불교)가 95% 이슬람교 3%, 기독교가 2%</li> </ul>

국 가	네팔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정부형태	공화제 ('08년 왕정 종식)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가미	대통령제
면 적	15만km <sup>2</sup> (한반도의 2/3)	6만5천km <sup>2</sup> (한반도의 1/3)	45만km <sup>2</sup> (한반도의 2배)
인 구	2,930만명(2017)	2,144만명(2017)	3,239만명 (2017)
G D P	245억불(2017) (835불/인)	872억불(2017) (4,065불/인)	487억불(2017) (1,504불/인)
민족구성	아리안족(80%), 티벳몽골족, 기타	싱할라족(74%), 타밀족, 무어족	우즈벡(80%), 러시아, 타지크, 카자흐, 기타
언 어	네팔어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	우즈벡어, 러시아어(공용어)
종 교	힌두교(87%), 불교, 이슬람교	불교(69%),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슬람교(88%), 러시아정교
기 후	아열대 몬순	고온다습 열대성 기후	고온건조 사막성기후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팔은 과거 힌두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던 유일한 국가였으나 신헌법이 2008년 6월 15일부터 발효되어 국교를 폐지</li> <li>○대한민국과 네팔의 공식적인 교류는 1969년 5월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한 이후 시작</li> <li>○모두 574명의 한민족들이 네팔에 거주(2010년 12월 기준)하는 것으로 알려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는 2000만 명이 넘어 인구밀도는 다소 높은 편이며, 민족구성은 토착인인 싱할라인이 75%, 타밀인이 15%, 무슬림 10% 순임</li> <li>○싱할라어와 타밀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음. 싱할라어는 스리랑카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임 타밀어는 근대 이후 영국인들과 함께 스리랑카로 본격 유입된 인도의 타밀 지방 출신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즈베키스탄의 어원은 직역하면 "우리들의", "벡, 베크"는 투르크어로 왕이라는 뜻이며, "스탄"은 영어 "State"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로 "지역", "땅"이라는 뜻임</li> <li>○우즈베크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세운 왕이 있다는 뜻으로 독립적인 민족이라는 의미임</li> </ul>

국 가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정부형태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
면 적	68만km <sup>2</sup> (한반도의 3배)	15만km <sup>2</sup> (한반도의 2/3)	80만km <sup>2</sup> (남한의 3.5배)
인 구	5,337만명(2017)	1억 6,470만명 (2017)	1억 9,700만명 (2017)
G D P	693억불(2017) (1,299불/인)	2,497억불(2017) (1,517불/인)	3,050억불(2017) (1,548불/인)
민족구성	버마족(70%), 소수족, 기타	벵갈인(98%), 기타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터키아리안족
언 어	미얀마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벵갈어(90%, 공용어)	우르두어, 펀자브어, 신디어
종 교	불교(89.5%),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슬람교(83%, 국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97%, 국교), 힌두교, 기독교
기 후	열대 계절풍기후	아열대 몬순기후	고산성 기후, 온대하위기후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면적은 678,500km<sup>2</sup>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중에서 가장 크며 세계에서 40번째임</li> <li>○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단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적으로는 서부의 아라칸 산맥, 북부의 고산지대, 중부의 저지, 동부의 산 및 테나세림 산지가 펼쳐져 있음</li> <li>○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열대 몬순 기후로서 동쪽의 태국과 비슷하나 만달레이 이북은 온대 동계 건조 기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접경과 갠지스 강 삼각주 지역은 지대가 낮지만 미얀마 국경으로 가까워 질수록 지대가 높아짐. 지리적으로 비옥한 갠지스 강 삼각주 지대에 위치하고 있음</li> <li>○ 방글라데시 국토의 대부분은 인도 아대륙의 벵골만 부근에 형성된 삼각주이며, 이 삼각주를 크고 작은 하천이나 칼이라는 수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음</li> <li>○ 방글라데시를 상징하는 동물은 벵골 호랑이, 나라 꽃은 수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키스탄이라는 이름은 초우 드리 라흐마트 알리가 파키스탄을 구성하는 5개 지역 명에서 따온 조어(造語/組語)이며, 우르두어와 페르시아어로 "신성한 땅"이라는 뜻이 되도록 지은 말임</li> <li>○ 파키스탄의 총면적은 803,940 km<sup>2</sup>로 세계에서 34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약 8.2배이며,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3.7배이임</li> </ul>

국 가	키르기스스탄	중 국	동티모르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의원내각제
면 적	20만km <sup>2</sup> (한반도의 0.95배)	960만km <sup>2</sup> (한반도의 44배)	1만5천km <sup>2</sup> (강원도 크기)
인 구	620만명(2017)	13억 8,600만명 (2017)	129만명 (2017)
G D P	76억불(2017) (1,220불/인)	12조2,377억불(2017) (8,827불/인)	30억불(2017) (2,279불/인)
민족구성	키르기스인(66%),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한족(91.5%), 55개 소수민족	파푸안 계통, 테툼, 기타
언 어	키르기스어, 러시아어(공용어)	중국어	포르투갈, 테툼어(현지어)
종 교	이슬람(75%), 러시아정교	도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카톨릭(91%), 기독교, 이슬람교
기 후	대륙성, 건조기후	대륙성 열대, 온대 기후	적도지역 몬순성 기후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 전체의 40%가 해발 3000m를 넘는 산간 지방임. 국토는 동서로 길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경에는 험산 산맥이 펼쳐져 있음. 남쪽에 위치 하는 타지키스탄으로는 파미르 고원이 펼쳐져 있음.</li> <li>○ 동서로 뻗어있는 계곡 부분은 사람이 거주하기 적절하며, 쿠파의 기후 구분으로는 하계에 비가 적은 온대의 지중해성 기후 (Cs)에 해당함. 이것은 이탈리아의 로마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기후 지역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화인민공화국은 표준 중국어인 푸통화(普通話) 혹은 귀위(國語)가 사용 되나 소수민족이 사용 하는 다른 언어도 있음</li> <li>○ 중국어의 경우 같은 표준 중국어(푸통화)와 상호 의사소통성이 없는 방언이 여러 가지 있음. 소수민족의 언어로는 몽골어, 좡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후이어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발리 섬으로부터 비행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위치함</li> <li>○ 동티모르는 티모르 섬의 동부와 티모르 섬의 서부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티모르 섬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가 통치하는 여러 섬에 둘러싸여 있음</li> <li>○ 동티모르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며 건기는 4월부터 10월 까지이고 우기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임</li> <li>○ 한낮의 최고 기온은 섭씨 35도 이상으로 무덥고 오후에 접어들면 간간히 소나기가 내리고 있음</li> </ul>

국 가	태국	베트남	몽골
정부형태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공산당 1당제	대통령제
면 적	51만km <sup>2</sup> (한반도의 2.3배)	33만km <sup>2</sup> (한반도의 1.5배)	156만km <sup>2</sup> (한반도의 7배)
인 구	6,904만명(2017)	9,554만명 (2017)	307만명 (2017)
G D P	4,552억불(2017) (6,594불/인)	2,239억불(2017) (2,343불/인)	115억불(2017) (3,735불/인)
민족구성	타이족(95%), 기타	비엠티족(89%), 54개 소수민족	몽골족(90%), 카즈흐
언 어	타이어(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몽골어
종 교	불교(95%),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12%), 카톨릭(7%) 등	라마교(90%), 이슬람교
기 후	열대 몬순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면적은 51만4000km<sup>2</sup>로 세계 49위임. 동남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자연 환경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지역 - 북부, 중부, 동북부 및 남부로 구분되며,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징을 보임</li> <li>○ 다른 여러 동남아시아 나라와 마찬가지로 열대몬순 지대에 속함. 수도 방콕에서 가장 더운 4월 평균 기온이 섭씨 29.5도이며, 가장 시원한 12월 평균 기온은 섭씨 25.3도이며 연교차는 4.2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대 계절풍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많은 비를 몰고 오며, 11월부터 4월까지 동북 건조기간임. 북부 일부 지역은 사계절이 나타나고 습도가 90%의 비중을 차지함</li> <li>○ 남부 지방은 일년 내내 건조하고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 중부 지방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과 가장 습한 지역이 자리잡고 있음. 산악 지방은 삼각주나 해안 저지대보다 대체로 기온이 낮고 비가 더 많이 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속함. 국토는 47기 성격의 지대로 나뉘. 서쪽은 알타이, 향기이라고 하는 큰 산맥, 남쪽은 바위와 모래가 전부인 고비 사막, 동쪽은 아무것도 없는 초원 그리고 북쪽은 후브스굴 호와 사람이 뚫고 지나가기 불가능한 시베리아의 남쪽 산맥(타이가)으로 이루어져 있음</li> <li>○ 몽골인의 주된 종교는 티베트 불교로 역사적으로는 티베트와의 관계가 깊음. 하지만 1992년 선거로 민주화된 이후 개신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되고 있음</li> </ul>

국 가	라오스
정부형태	라오인민혁명당 1당제
면 적	24만km <sup>2</sup>
인 구	685만명(2017)
G D P	169억불(2017) (2,457불/인)
민족구성	라오족(90%), 기타
언 어	라오스어
종 교	불교(90%), 카톨릭, 기독교
기 후	열대 몬순 기후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 중 유일하게 바다가 면한 부분이 없음 지형은 중국에서 남하하는 안남산맥이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음</li> <li>○ 기후는 대다수 지역이 열대 몬순 기후이나 내륙 지방이므로 하계와 동계의 기온차가 큰 편임.</li> </ul>